

2023. 3. 27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3월 27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재무국 세제과

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5매

세 제 과 장	서 은 경	2133-3350
세제정책팀장	정 한 섭	2133-3352
담 당 자	송 유 니	2133-3357
전략산업기반과장	최 종 익	2133-8460
전략산업정책팀장	김 태 진	2133-8461
담 당 자	이 윤 정	2133-8476

서울시, IT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나서

- IT산업 전략적 육성 및 집적화 위해 성수IT지구 지정· 운영중
- 성수IT지구 내 권장업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% 감면 신설
- IT기업의 입지 여건 조성 및 산업 집적 유인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지원

- 서울시는 올해 3월 27일부터 성수IT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 정보통신산업(IT) 및 연구개발산업(R&D)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%를 감면한다고 밝혔다.
- 성수IT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(이하 ‘성수IT지구’)는 테헤란밸리 등 강남권과 인접한 이점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산업(IT) 및 연구개

발산업(R&D) 위주의 산업 집적화를 유도하여 동북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, 2010년 성동구 성수동2가3동 일대에 지정된 지구다.

- 성수IT지구 내 권장업종에 사용되는 산업시설의 경우 용적률 최대 120%, 건물 높이제한 최대 120%까지 건축규제가 완화되고,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는 건설자금(최대 100억원), 입주자금(8억원 이내), 경영안정자금(5억원 이내) 등 융자가 지원된다.
- 서울시는 금번 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」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입지 여건 조성 및 산업 집적 유인을 통한 지역 기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다.
- 취득세 감면대상은,
 - 성수IT지구 내 권장업종(정보통신산업(IT) 및 연구개발산업(R&D), 이하 같음)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·증축하는 부동산 및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분양받는 부동산,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을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%를 경감한다.
 - 다만,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, 5년 이내에 취소된 경우,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

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정된다.

-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“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세제 지원을 통해 성수IT지구 내 입지공간이 확충되고 IT기업이 집적 유인됨에 따라 IT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말했다.

- 붙임 1. 성수 IT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 개요 및 위치도
2. 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」 개정 주요내용

□ **개 요**

- 지정 일 : 2010. 1. 28. (서울시 고시 제2010-21호)
- 위치/면적 :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/ 539,406㎡
- 권장업종 : 정보통신산업(IT) 및 연구개발산업(R&D)

권 장 업 종	권장업종의 정의
IT 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정보통신: 정보의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·수신 및 그 활용, 이에 관련되는 기기(器機)·기술·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(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) ● 정보통신산업 :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·제조·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(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)
R&D 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연구개발: 자연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탐색하고 해명해서 그 성과를 실용화하는 일 ● 연구개발산업: 기초연구와 그 응용화 연구(research)와 이러한 연구성과를 기초로 실용화 및 제품화까지 진행하는 개발(development)을 담당하는 산업

□ **진흥지구 주변 및 지구 결정도**



- 근거조례 : 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」 제6조의2
- 감면대상 : 성수IT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 권장업종(정보통신 산업(IT) 및 연구개발산업(R&D), 이하 같음)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
 -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·임대하기 위해 신·증축하는 경우
 - 권장업종용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아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
 -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을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(해당 부동산이 최초로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는 경우에 한함)
- 감면율 : 취득세 50% 감면
- 추정요건
 -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5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
 -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
 - 취득일부터 1년(신·증축 토지 3년)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
 - 사용기간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- ※ 취득세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권장업종시설 (예정시설)지정증 등의 구비서류를 해당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